

연명치료중단 관련 사회적 흐름 개괄

오늘날 연명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활발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 개념 정의에 대해서조차 의견이 분분하고 다양한 견해가 혼재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연명치료중단 관련 논의의 흐름과 공론화를 위한 다계각층의 노력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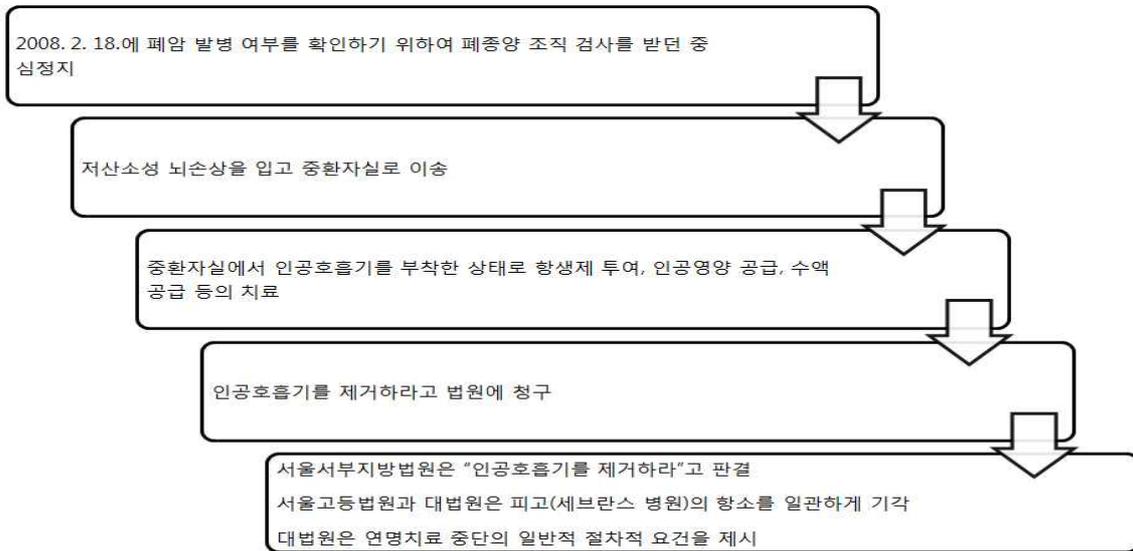
1.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촉발

우리나라에서 처음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 계기는 2004년의 소위 보라매병원 사건이다. 이 사건은 뇌수술 후 인공호흡기를 하고 회복 중이던 환자(남 58세)의 아내가 의료비 부담을 이유로 의료진의 의학적 권고에 반하여 퇴원 후 사망한 사례로서 법원은 환자의 아내에게 살인죄를 의료진에게 살인방조의 죄를 인정하게 된다. 다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연명치료 중단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엄밀하게 말해 이 사건은 환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말기환자가 아니었고 계속 치료를 받을 경우 회복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죽음에 대한 환자 본인의 의사도 없었다는 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해당되는 사건은 아니었다.

보라매 병원 사건 이후로도 우리 사회에서는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사건이 왕왕 발생하였고 법원은 기본적으로 살인죄를 인정하되, 환자의 상태나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을 달리하는 태도를 취하였었다.

사건	시기	개요	환자 상태	동기	사법처리
보라매 병원	1997. 12	뇌출혈 환자가 아내의 요구에 따라 퇴원 후 사망	뇌수술 뒤 병세 호전 중	의료비 부담	아내:살인죄 의사:살인방조
용산 사건	2003. 10	아버지가 희귀병 딸의 산소호흡기 전원 끈 뒤 사망	3년간 산소호흡기 의존, 사건 당일 TV시청	의료비 부담	살인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3년
서울대 병원 사건	2006. 6	딸의 요구에 따라 말기 간경변 환자 산소 호스 제거	죽음의 과정 진행 중	생전 요청	딸/의사 무혐의 처리
담양군 사건	2007. 8	아버지가 식물인간아들의 인공호흡기 제거	소생가능성 희박한 식물인간	고통 경감, 수발 부담	아버지 집행유예

우리나라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은 일명 金할머니 사건으로 불리우는 2009년의 연세대학교병원 ‘존엄사’ 사건이다. 김할머니 사건은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로 심정지가 발생,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고 지속적 식물 상태(PVS)가 되어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항생제 투여, 인공영양 공급, 수액 공급 등의 치료를 받던 환자(75세)의 가족들이 법원에 대하여 ‘치료중단(인공호흡기제거)’을 청구한 사건이다.



본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하였고 고등법원과 대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대법원은 사망 단계에 진입한 환자에 대한 진료 중단의 허용 요건을 제시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2. 법안 발의

보라매 병원 사건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입법 노력이 있어 왔다. 2006년 2월 안명옥의원(외 9인)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은 의학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환자를 억지로 연명시키는 것은 환자 본인에게나 그 가족에게 큰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되며, 그에 따라 치료중단을 요구하는 보

호자나 이를 승인한 의사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연명치료중단을 허용하고자 하였다.

2008년에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사전의료지시서를 인정하고자 하였다. 이 법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자를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악화되며 수개월내에 사망할 것으로 의학적으로 진단받은 말기암환자와 가족'으로 제한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신청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여 담당 의사 2명의 소견서를 통해 말기판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009년에는 신상진 의원이 존엄사법을 그리고 김세연 의원이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사법)을 발의하였으나 18대 국회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존엄사법과 자연사법 모두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는 반대하지만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사전의료지시 제도는 인정하였다. 존엄사법의 경우 현대 의학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환자에 한해 인위적인 생명 연장장치를 환자 스스로가 포기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면서 연명치료 등에 참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책임 면제하였다. 자연사법은 생명연장조치 중단 결정은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르고, 가족 등 대리인에 의한 의사 추정은 금지하되 구체적인 생명연장조치 중단에 대한 요건충족 여부는 해당병원의 기관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였다.

	신상진	김세연	김충환	안명옥
	존엄사법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일부 개정안
	2009년	2009년	2008년	2006년
안락사	반대	반대	-	-
의사조력자살	반대	반대	-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사전의료지시	인정	인정	인정	-

3. 의료계 자율 지침 마련

우리 사회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한 이후로 의료계 스스로도 자율적으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왔다.

2002년 5월 대한의사협회는 ‘임종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의료윤리지침’을 발표하고 환자의 임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연명 치료를 유보 혹은 중단하고 퇴원할 것을 요구하면 그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며,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대리인의 요구를 존중해야 하며, 타당한 절차의 논의과정을 거친 후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 2001년 4월 제정된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의 개정을 통해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은 금지하면서도 회생가능성이 없이 무의미한 치료를 받는 환자에 대해,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연명치료에 대한 중단, 퇴원을 요구할 경우 의사는 그러한 의료행위를 보류, 철회, 중단할 수 있다고 보아 ‘존엄사’를 허용하는 한편, 회복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의식불명 혹은 스스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환자에게까지 치료중단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김할머니 사건의 발생 이후 각 병원과 의료계에서는 각각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하게 된다. 세브란스병원은 2009년 5월 ‘3단계 존엄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서울대 병원도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진료권고안’을 앞다투어 발표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2009년 10월에는 대학의학회 주도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를 통해 연명치료 적용·중지의 범위 및 기준 등을 제시한 ‘연명치료중지에 관한 지침안’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에 따르면 2명 이상 의사가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말기환자(암·만성질환자 및 뇌사·임종환자) 또는 6개월이상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절차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대상 환자	결정 과정
임종 환자	의학적 판단과 가족의 동의에 따라 중지 결정
뇌사상태 환자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중지
의사결정 능력 없는 특수연명치료 적용 환자	환자의 명시적 의사표시 중지 명시적 의사표시 없는 경우, ① 의학적 판단, ② 환자의 추정적 의사 또는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병원윤리위원회에서 판단

4. 사회적 협의체 운영

정부는 2009년 5월 김할머니 사건 판결 이후로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회 법안 심의 시 활용하기 위해 2009년 12월 종교계·의료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입법부로부터 추천된 위원 18명으로 구성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관련 사회적 협의체(이하 ‘사회적 협의체’)”를 조직하여, 2010년 6월 28일까지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그 논의 결과를 공식 발표하였다.

그 결과 자발적 의사결정이 곤란한 경우 의사 추정 및 대리예 의한 의사표시 인정문제와 입법 추진 등을 제외한 연명치료 중단 대상 환자 ·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의 범위 ·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절차 및 의사결정기구 등 4개 항목에는 합의를 이뤄냈다. 합의를 이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명치료 중단 대상은 말기환자로 제한하고,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되, 말기상태이면 포함한다.
2. 중단가능한 연명치료 범위에 대해서는 말기환자의 수분·영양공급 등 일반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없으며,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등 특수연명치료에 한하여 중단될 수 있다.
3. 말기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4. 의사결정기구로서 국가 차원의 정책 심의기구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의 “국가말기의료심의위원회”를, 의료기관별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5. 민간운동

의료계와 법조계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연명치료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풀뿌리 민간 운동이 이루어졌다. 각 학회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가 하면 보건복지부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는 2010년 12월 16일부터 2011년 12월까지 사전의료의향서 양식을 개발 및 배포하고, 사전의료의향서 사본 보관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으며 2012년 9월에는 의료계, 법조계, 학계, 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는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이 발족되어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운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참고 문헌

- 구영모. 안락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구영모(편). 생명의료윤리(개정증보판). 동녘, 2004
- 권복규, 김현철. 생명윤리와 법(개정판).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 김상득. 생명의료윤리학. 철학과현실사, 2000
- 김소운 외. 연명치료중단관련 법정책 방향.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6권 제1호. 2008
- 김소운 외. 연명치료중단과 유보 결정에 대한 한국 중환자 전담의사 인식과 실행.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2권 제1호. 2009
- 신영태 외.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연수원생들과 전공의와 수련의들의 인식도 조사.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제11권 제1호. 2008
- 이동익. 무의미한 연명치료 행위의 중단에 관한 윤리적 고찰. 2008년 12월 22일 안락사와 존엄사 심포지엄 발표문 자료집
- 이인영. 안락사 유형별 규범해석과 사회적 인식도. 형사법연구 2008
- 이인영.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입법제안.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입법제안 심포지엄 발표문 자료집
- 이인영. 미국의 자연사법(natural death act) 규범과 의료인의 면책규정이 주는 시사점. 비교형사법연구 2008
- 정규원. 무의미한 치료에 대한 형법적 판단.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06
- 최경석. 자발적인 소극적 안락사와 소위 존엄사의 구분 가능성.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2권 제1호. 2009
- 최지윤, 권복규. 안락사와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우리나라의 최근 동향.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2권 제2호.2009
- 국정홍보처. 2006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보고서. 2006
- 보건복지가족부.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관련 추진상황 보고. 2009
- 보건복지가족부.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관련 사회적 협의체 내부 회의 자료. 2009
- 서울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 조사 및 법제화 방안 연구. 2009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 제시. 2009